

여신거래 채무인수 약정서 공시사항

1. 기본사항

제정일	개정시행일	판매종료여부(종료일)	기존고객적용여부
2019.04.05	2020.03.26	○ (22.01.01)	○

2. 개정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1			
2			

3. 담당부서명 : 여신심사관리부

채무인수 약정서

신협(신협) (주) 신한은행

은행은 약정관계인 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고객 번호 : 20 년 월 일

수입
인지

채 권 자 : 주식회사 중국공상은행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층, 16층, 18층	(인)
채 무 자 : 주 소 :	(인)
채무인수인 : 주 소 :	(인)
근저당권설정자(소유권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) : 주 소 :	(인)
근저당권 설정자(소유권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) : 주 소 :	(인)
연대보증인 : 주 소 :	(인)
연대보증인 : 주 소 :	(인)

■ 제1조 채무의 인수

①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아래 표시의 약정서(이하“원약정서”라 한다)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그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할 것을 청약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.

● 원약정서상의 채무표시 (년 월 일 현재)

채무구분	1	2	3	4	5
원약정서	약정서	약정서	약정서	약정서	약정서
채무자					
채무액	원금				
	이자				
	지연배상금				
	부대채무				
	합계				

②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(이하 “담보제공자”라 한다)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에 대하여 동의하였다.

■ 제2조 채무자 및 채무인수의 지위

채무자 및 채무인수인은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의 지위를 가진다.

□ 면책적인수형

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고,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원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.

□ 중첩적인수형

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,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원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.

■ 제3조 담보, 보증의 유지

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인은 아래 표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보증계약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는 데 동의합니다.

□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표시

구분	1	2	3	4	5
등기 등록	관할 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	지방법원 등기소
	접수일자				
	접수번호	제 호	제 호	제 호	제 호
	채권최고액				
	물건목록	물건목록	물건목록	물건목록	물건목록
	순위번호	순위번호	순위번호	순위번호	순위번호

□ 보증계약의 표시

구분		1	2	3	4	5
계약일자	접수일자
약정서 또는 보증서※						

※ 약정서 또는 보증서란은 여신(대출)거래약정서 또는 보증서의 종류(특정채무보증계약서, 특정, 한정, 포괄근보증계약서)를 기재합니다.

■ 제4조 변경등기, 등록 기타의 대항요건

이 약정 당사자는 제3조의 담보, 보증에 관하여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로 말미암은 변경등기, 등록기타 대항요건구비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.

■ 제5조 계약의 해제

-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, 등록, 대항요건 구비 등이 이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원약정서에 의한 채무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책임은 원래대로 복귀합니다.

■ 제6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②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, 변경, 이전,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③ 채권자는 제2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.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,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.
 - 1.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
 - 가.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: 채권자
 - 나.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
 - 2.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
 - 가.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: 채권자
 - 나.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
 - 3. 기타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: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
- 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,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,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.

■ 제7조 특약사항

	채 무 자	(인)
	채무인수인	(인)
	담보제공자	(인)
	담보제공자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
□ 물건목록 및 순위번호

물건 목록	순위번호	
	등기상순위	실제순위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습니다.	채 무 자	(인)
	채무인수인	(인)
	담보제공자	(인)
	담보제공자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
□ 보증계약의 표시

구분		1	2	3	4	5
계약일자	접수일자
약정서 또는 보증서※						

※ 약정서 또는 보증서란은 여신(대출)거래약정서 또는 보증서의 종류(특정채무보증계약서, 특정, 한정, 포괄근보증계약서)를 기재합니다.

■ 제4조 변경등기, 등록 기타의 대항요건

이 약정 당사자는 제3조의 담보, 보증에 관하여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로 말미암은 변경등기, 등록기타 대항요건구비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.

■ 제5조 계약의 해제

-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, 등록, 대항요건 구비 등이 이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원약정서에 의한 채무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와 책임은 원래대로 복귀합니다.

■ 제6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②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, 변경, 이전,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③ 채권자는 제2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.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,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.
 - 1.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
 - 가.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: 채권자
 - 나.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
 - 2.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
 - 가.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: 채권자
 - 나.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
 - 3. 기타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: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
- 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,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,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.

■ 제7조 특약사항

	채 무 자	(인)
	채무인수인	(인)
	담보제공자	(인)
	담보제공자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
□ 물건목록 및 순위번호

물건 목록	순위번호	
	등기상순위	실제순위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습니다.	채 무 자	(인)
	채무인수인	(인)
	담보제공자	(인)
	담보제공자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
